2018학년도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1. 회의 일정

가. 일 시 : 2018. 2. 6(화) 13:30 ~ 15:00 ▶ 회의 소집통보일 : 2018. 1. 29(월)

나. 장 소 : 인문캠 자연캠 화상회의실

다. 위원구성 (총9명)

구 성	대학측				학생측				외부	비고
성 명	김성철	김기영	한영근	김인택	김기용	이상민	최영미	서누리	박준영	
위원직책	기획조정 실장(위원장)	인문학생경력 개발처장	자연학생경력 개발처장	대학원 교학처장	인문총학생 회장	자연총학생 회장	특수대학원 대표	일반대학원 대표	국민은행 지점장	
소속	대학본부	인문캠(학부)	자연캠(학부)	대학원	인문캠(학부)	자연캠(학부)	인문캠(대학원)	자연캠(대학원)	외부	
성별	남	남	남	남	남	남	여	여	남	
구성비율	4명 (44%)				4명 (44%)				1명(12%)	

라. 참석위원

구성	대학측				학생측				외부	비고
성명	김성철	김기영	한영근	김인택	김기용	이상민	최영미	서누리	박준영	총참석율
성별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8/9명)
참석비율	75%				100%				100%	89%

라. 불참위원 : 김기영

마. 기타참석 : 기획예산팀 윤준환팀장, 장형근과장

사. 상정안건

구분	안 건 내 용	비 고
1	2017학년도 추경예산 편성(안)	
2	2018학년도 본예산 편성(안)	
3	이월금 사용계획(안)	
4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안)	
5	등심위 규정 개정(안)	

2. 회의 주요 내용

● 윤준환 (간사) : 등록금심의 위원회 3차에 위원들에게 재적인원 총 9명중 8명 참석으로 성원 되었음을 알리다

● 김성철위원장 (학교측): 위원들에게 등록금심의위원회3차 개회를 선언하다.

● 김성철위원장 (학교측): 등심위 3차회의 논의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 윤준환 (간사): 1차 안건으로 2017학년도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부속명세서와 함께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하다.

* 2017학년도 추경예산

(단위 : 억원)

항 목	항 목	2017학년 예산	2017학년 추경	2017학년 증감	비 고
수입	등록금	1,369	1,380	11	■ 등록금비율 : 67%
	전입금 및 기부금(국가장학등)	377	390	13	(등록금/총수입)
	교육부대수입 (생활관등)	94	88	-6	
	기타교육외수입 (이자수입등)	27	33	6	
	운영 수입	**1,867**	**1,891**	**24**	
	적립금인출 수입	71	146	75	
	기타자산 매각수입	-	-	0	
	신규차입금,보증금등	-	-	0	
	운영외 수입	**71**	**146**	**75**	
	전기이월금	-	24	24	
	총수입	**1,938**	**2,061**	**123**	
지출	보수	896	890	-6	
	관리운영비	230	217	-13	
	연구비, 학생경비 (장학금)	730	785	55	
	교육외비용	7	5	-2	
	예비비	5	2	-3	
	운영 지출	**1,868**	**1,899**	**31**	
	특정기금 적립등	19	44	25	
	공사비, 기계기구 매입비등	44	111	67	
	차입금 상환등	7	7	0	
	운영외 지출	**70**	**162**	**92**	
	차기이월금	-	-	0	
	총지출	**1,938**	**2,061**	**123**	

● 김성철위원장 (학교측): 안건에 설명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지 위원들에게 묻고, 다음 안건설명을 요청하다.

● 윤준환 (간사): 2차 안건으로 2018학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증감내역을 자세히 설명하다.

* 2018학년도 본예산

(단위 : 억원)

항 목	항 목	2017학년 추경	2018학년 본예산	2018학년 증감	비 고
수입	등록금	1,380	1,367	-13	■ 등록금비율 : 70%
	전입금 및 기부금(국가장학등)	390	367	-23	(등록금/총수입)
	교육부대수입 (생활관등)	88	91	3	
	기타교육외수입 (이자수입등)	33	36	3	
	운영 수입	**1,891**	**1,861**	**-30**	
	적립금인출 수입	146	96	-50	
	기타자산 매각수입	-	-	0	

	신규차입금,보증금등	-	-	0	
	운영외 수입	**146**	**96**	**-50**	
	전기이월금	24	-	-24	
	총수입	**2,061**	**1,957**	**-104**	
지출	보수	890	890	0	
	관리운영비	217	231	14	
	연구비, 학생경비 (장학금)	785	735	-50	
	교육외비용	5	4	-1	
	예비비	2	3	1	
	운영 지출	**1,899**	**1,863**	**-36**	
	특정기금 적립등	44	9	-35	
	공사비, 기계기구 매입비등	111	57	-54	
	차입금 상환등	7	28	21	
	운영외 지출	**162**	**94**	**-68**	
	차기이월금	-	-	0	
	총지출	**2,061**	**1,957**	**-104**	

- 김성철위원장 (학교측): 안건에 대한 질문 및 추가 설명이 필요한지 위원들에게 묻다
- 김기용(학생측): 대학 장학금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윤준환 (간사): 대학재정의 등록금, 인건비, 장학금, 적립금부분에 대한 내역을 위원들에게 추가로 설명하다.
- 김인택 위원 (학교측) : 몇차례의 등심위 회의를 통하여, 학교재정 및 현안에 대하여 많은 이해가 되었음을 말하다.
- 모든위원 : 1차안건 [2017학년도 추경예산(안)]과 2찬안건[2018학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하다.
- 윤준환 (간사): 3차 안건으로 교비회계 이월금 사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다. 2017학년도 교비회계에 예산이월금 발생시,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함을 설명하다.
- 모든위원 : 대학 교비회계 이월금사용계획(안)에 동의하다.
- 박준영 (외부): 몇년간의 대학등록금 동결등으로 대학재정의 어려움을 공감하였고, 동문회의 적극적인 발전기금 모금활동으로 명지대학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준환 (간사): 4차 안건으로 우리대학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교육부 승인 내역을 위원들에게 설명하다.
- 모든 위원 : 우리대학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안)에 동의하다.
- 윤준환 (간사): 5차 안건으로 등심위 규정 개정(안)에 대한 변경내용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추가의견을 묻다.
- 모든 위원 : 우리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개정(안)에 동의하다.
- 김성철위원장 (학교측):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대학정보공시자료(대학 알리미)로 공시됨을 안내하다.
- 폐회 : 위원장 폐회선언 (15:00)

2018. 2. 6일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철 ( )

위 원	김기영	(———)	위 원	이상민	(이상민)
위 원	한영근	( )	위 원	최영미	( )
위 원	김인택	( )	위 원	서누리	(서누리)
위 원	김기용	( )	위 원	박준영	(박준영)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대학과 대학원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각 위원회의 구성단위는 총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단위의 위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직원 : 4명 2.학생 : 4명(대학 2명, 대학원 2명) 3.관련 전문가 : 1명 4.(삭제 2011.12.1)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2조(구성) ①(현행과 같음) ②위원회의 구성단위는 총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단위의 위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조 신설>	제2조의2(추천·위촉) ①교직원 위원은 10년 이상 근속한 재직자 중 대학의 주요 정책 및 등록금 회계에 충분한 식견을 갖춘 자로 한다. ②학생 위원은 재학 중인자로 하며 학부의 경우 인문 및 자연캠퍼스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관련 전문가는 교육행정 관련 전문가 또는 재정·회계 전문가로 선임 하되 학교법인 명지학원(이하 "법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법인 관련 인사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관계가 있는 자와 기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자는 외부 관련 전문가 위원이 될 수 없다.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학생 위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물어야 한다.	
제5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회의) ①(현행과 같음) ②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메일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대학 홈페이지 해당 게시판에 회의 개최에 대하여 회의 개최 7일 전에 공개해야 한다.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5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회의) ①(현행과 같음) ②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메일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③대학 홈페이지 해당 게시판에 회의 개최에 대하여 회의 개최 7일 전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④(현행 제2항과 같음)	
<신설>		
	제6조(회의록) ①(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록) ①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장은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은 관련 법령에 의거 공개하며, 개인 사생활 등에 대하여는 공개를 제한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대학 홈페이지 해당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비밀유지) <삭제>	
	부 칙	
제7조(비밀유지) 위원 및 관계 교직원이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